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2012년 ‘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’의 일환으로 헴프전시체험실이 조성되었으나, 2021년 9월 최종 위탁기간 만료 이후 활용 및 실적 없이 형태만 유지하였음

※ 2014년 9월 헴프 지역특화산업이 중단*됨에 따라, 위탁기간 동안 방림 삼베 등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·숙박 공간으로 활용

* 중단사유 : 평창헴프 종자 내 환각성분(THC)이 정량한계를 초과하여 당초 목표했던 헴프기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불가능

나. 2023년 11월 해당 재산의 활용을 위해 야영장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 용도로 사용허가 하였으며, 더이상 헴프전시체험실의 용도로 활용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 :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11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3. 22. ~ 4. 11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[경제과-20070(2024. 4. 15.)]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[기획실-4431(2024. 3. 19.)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실-4431(2024. 3. 19.)]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(폐지조례안으로 평가대상 아님)
- 5) 법제심사 : 걱정[기획실-6110(2024. 4. 17.)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 4. 30.)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참고] 현행 조례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29.>

제2조(위치)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 이라 한다)은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에 둔다. <개정 2017.9.29.>

제3조(시설운영) ① 전시체험실은 헴프(삼베)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,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 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
2.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
3.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

제4조(관리위탁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29.>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“라 한다)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7.9.29., 2018.1.19.>

③ 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29.>

제5조(사용료 등) ①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기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관리수탁자의 의무) ①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

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·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증서의 제출) ①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위탁계약 즉시 가입하고 군수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·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
2. 제10조에 따른 조사·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7.9.29., 2018.1.19.>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5항제1호
3. 미첨부 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이 서 진
연락처	(033) 330 - 2745